##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제정 2008. 11. 11 조례 제1625호

일부개정 2011. 11. 8 조례 제1804호

일부개정 2014. 10. 17 조례 제2024호

일부개정 2016. 1. 1 조례 제2149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 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 정조례)

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6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 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)
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 일부개정 2019. 12. 20 조례 제2559호(제명개정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- 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  - 1. "공무원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속 공무원(청원경찰을 포함한다) 및 상근인력 나.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
  - 2. "신고자"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3. "부조리"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4. "보상금"이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.
- 제3조(신고 및 지급대상) ①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(이하 "부조리 행위"라 한다)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. 〈개정 2011. 11. 8, 2019. 12. 20〉

####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- 1.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
- 2.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·청탁 행위
- 3. 자신의 지위·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
- 4.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,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-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「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
- 제4조(신고자) ① 공무원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 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.
  -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,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. 〈개정 2018. 7. 31〉
- 제5조(신고기한)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(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)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로 한다. 이 외에, 「형법」 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완성일의 3개월 전까지로 한다. [전문개정 2019. 12. 20]
- 제6조(신고방법)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수 있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,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
- 제7조(신고사항의 처리)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  - 1. 신고자 인적사항
  - 2. 신고의 경위・취지 및 이유
  - 3.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
  - 4.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
  - 5. 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·고소 ·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
  - 6.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
  -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7. 31, 2019. 12. 20〉
  -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·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7. 31, 2019. 12. 20〉
- 제8조(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)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서 하되,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부조리의 유형과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이내의 금품·향응·알선 또는 부당이득 추정액에 대하여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  - 1.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
  - 2.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
  - 3.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
  -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  - 1.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
  - 2.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

- ③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또는 시민·이해관계인·참고인 등의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, 12, 20〉
- 제9조(보상금의 지급)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. 〈개정 2011. 11. 8, 2019. 12. 20〉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  -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보상금 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11. 11. 8, 2019. 12. 20〉
  - 1.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
  - 2. 제5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된 사항
  - 3.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
  - 4.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
  - 5.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[제목개정 2019. 12. 20]
- 제11조(환수)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, 환수 방 법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- 제12조(신고자 등의 보호) ① 시장은 신고한 사람과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·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에 따른 신분 상 또는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② 신고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 〈개정 2019, 12, 20〉
-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- 제13조(피신고자에 대한 조치) ① 시장은 신고 대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〈개정 2016. 9. 26, 2019. 12. 20〉
  - ② 신고된 사항이 범죄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-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1. 11. 8 조례 제1804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 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〈2014. 10. 17 조례 제202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6. 1. 1 조례 제2149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〈2016. 9. 26 조례 제2196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제2조 생략

부칙〈2019. 12. 20 조례 제255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표] 〈개정 2019. 12. 20〉

#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(제9조제1항 관련)

지 급 대 상	지 급 기 준	
1.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 고받는 행위	○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○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내	
2.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 하는 알선·청탁 행위	<ul><li>○ 알선・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수수액의 10배이내</li><li>○ 알선・청탁 행위 신고는 300만원이내</li></ul>	
3. 자신의 지위·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 실을 끼친 행위	○ 부당이득 추정액(추징 또는 환수결정액 등)의 10퍼센트 이내 ※ 부당이득의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 정하되,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.	
4.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	○ 횡령액 또는 유용액의 10퍼센트 이내	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은폐,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	○ 건당 100만원 이내	

### [별지 서식] 〈개정 2019. 12. 20〉

부 조 리 신 고 서				
신고자	성 명	생 년 월 일		
	직 업	연 락 처		
	근 무 처	주 소		
피신고자 (신고대상)	성 명	생 년 월 일		
	소 속 (전화번호)	직 위 (직 급)		
신 고 내 용				
증빙자료				
비 고				
「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
		년 월 (	일	
	신 고	인	(서명 또는 날인)	